

# 학생생활상담연구소 규정

본 규정은 수원대학교(이하 ‘대학’ 이라 함) 학생생활상담연구소(이하 ‘연구소’ 라 함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
**제1조(소재)** 연구소는 대학 내에 둔다.

**제2조(목적)** 연구소는 전문상담과 연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정체성 정립, 인격 성숙, 그리고 대학생활의 적응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사업 및 운영)** ①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개인 및 집단상담, 각종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
2. 각종 교육 및 워크숍 등의 예방사업
3. 각종 프로그램 기획사업
4. 신입생과 재학생 만족도 및 학사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
5. 연구소 홍보사업
6. 학생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
7. 위원회 운영
8. 연구소 연간 계획 수립
9. 각종 사업 통계 현황보고 및 관리
10. 각종 사업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관리
11. 연간보고서 작성 및 관리
12. 상담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
13. 학생 서포터즈 선발 및 운영
14. 교내외 상담관련 프로그램 지원
15. 기타 연구소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

②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5조 소정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4조(소장 및 상담사)** ① 소장은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소를 대표하고 운영전반을 총괄한다.

② 상담사는 수석·전임·시간제 상담사로 구분한다.

③ 수석·전임 상담사는 아래 각 호의 1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장이 임명하며, 시간제 상담사는 소장이 임명하되 아래 각 호의 1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1. 해당분야 전공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
2. 해당분야 전공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

④ 연구소의 제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**제5조(위원회)**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하고 상담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생활상담연구소 상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을 포함하여 5인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의 소요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의 제 규정의 재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또는 위원 과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, 심의사항에 대한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(예·결산 및 사업결과)** 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본교의 규정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.

③ 이 규정의 제정으로 종전의 경력개발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.

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